##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99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 김문수 · 문금주 · 박희승

허 영・박정현・박용갑

조인철 • 권칠승 • 추미애

강득구・양문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강원, 전북, 광주, 전남, 부산, 대구·경북, 포항 등 7개사로 설립 초기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창출과 지역창업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술 개발 활성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지주회사에 현금출자를 하는 경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주식의 비중이 증가하여 '산학협력단 등이 50%의 주식 보유 비율(제36조의2)'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· 운영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

출자·출연한 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지주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, 제36조의5).

법률 제 호

###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이 출자·출연한 기관
제36조의5제1항 중 "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(제36조의2제1항
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)"를 "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 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학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 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의2(기술지주회사의 설립	제36조의2(기술지주회사의 설립
·운영) ① 산학협력단 및 제2	・운영) ①
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	
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산업교육기관(이하 "산학	
협력단등"이라 한다)은 단독으	
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	
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	
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
	들이 출자·출연한 기관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6조의5(기술지주회사의 명칭)	제36조의5(기술지주회사의 명칭)
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	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
대학(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	학협력단이 단독으로 기술지주
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	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
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	<u>학</u>
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	
<u>한다)</u> 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	
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

	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
	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
	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
	임을 표시하여야 한다.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